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6 . 1 5 . (목)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79
제출일자 : 2023. 5. 31.
회부일자 : 2023. 6.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정경민 의원 외 17명

2. 제안 이유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예약자에 대한 사항 구체화 및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자연휴양림 예약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예약제외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라. 관리자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3)
- 마.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 등 별지 서식을 변경함
- 바. 기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불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불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산림자원개발원) : 불임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10일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구축하면서 표준화된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예약·결제 등 기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¹⁾.
- 이에,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²⁾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예약 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1)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숲나들e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숲나들e는 산림청,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주체별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의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함.

2) 경상북도는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을 자체 운영 중에 있음.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3)에 따른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3조에 경상북도가 조성·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5조 시설의 예약 규정에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휴양 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예약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산림청에서 구축한 예약정책 표준화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의2는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운영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관리·운영자가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별지 제2호 신설)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시설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의3은 관리자 예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방문자 본인 예약이 아닌 관리자

3)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계정에 따른 대리예약 등 예약관리 과정에서 부당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현행 조례 제11조 근무일지 및 비치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관리자 예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 의견

- 최근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객들의 편의성 및 예약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2022년 9월 감사원은 “국공립 자연휴양림(숲나들e) 예약서비스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지자체 자연휴양림의 대리예약 및 부당할인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도 예약담당자가 숲나들e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개정조례안의 법규 형식, 내용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부당 예약과

관리자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운영실적

구분	월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 건수	인원 (명)	수입 (천원)	가동률 (%)	이용 건수	인원 (명)	수입 (천원)	가동률 (%)	이용 건수	인원 (명)	수입 (천원)	가동률 (%)
합 계	합계	6,656	59,479	538,253	79	7,953	52,630	946,911	61	10,252	78,717	1,230,779	63
	가동률	79%				61%				63%			
안 동 호 반 자 연 휴 양 림	1월	358	3,280	45,359	49	58	232	7,075	100	445	3,478	57,290	61
	2월	228	2,038	26,150	50	126	504	21,995	40	436	3,427	55,075	60
	3월	0	0	0	0	110	443	16,120	33	223	1,737	27,615	28
	4월	0	0	0	0	183	734	31,290	54	682	2,385	49,220	83
	5월	300	2,667	23,819	83	254	1,016	46,500	67	684	2,751	82,410	81
	6월	640	5,830	46,198	95	296	2,462	45,603	65	542	4,421	74,278	71
	7월	768	6,864	68,297	98	483	4,018	83,483	61	620	5,186	108,821	74
	8월	610	5,482	61,522	85	626	5,207	108,910	77	679	5,726	122,928	78
	9월	0	0	0	0	531	4,217	70,130	72	506	4,179	70,683	67
	10월	200	1,530	15,247	94	615	5,068	84,840	84	641	5,437	85,145	82
	11월	506	3,893	38,278	93	558	4,920	76,191	82	520	4,402	69,377	72
	12월	281	1,980	26,598	85	388	2,954	51,219	60	445	3,722	63,481	57
	누계	3,891	33,564	351,468	81	4,228	31,775	643,356	66	6,423	46,849	866,323	68
	가동률	81%				66%				68%			
팔 공 산 금 화 자 연 휴 양 림	1월	323	2,374	29,301	52	81	268	5,016	78	306	2,007	24,170	54
	2월	181	1,330	15,456	42	121	416	9,163	50	285	1,973	22,345	54
	3월	0	0	0	0	116	385	9,300	34	199	1,264	15,210	35
	4월	0	0	0	0	142	606	14,056	44	235	1,522	20,473	45
	5월	165	1,971	11,600	92	205	1,192	21,579	56	323	2,946	29,763	59
	6월	303	3,855	20,465	95	166	1,034	17,191	43	332	3,292	31,751	58
	7월	556	5,647	38,250	88	547	2,181	45,489	55	441	4,167	53,405	72
	8월	497	5,002	35,780	91	680	3,944	61,965	70	425	4,093	53,763	79
	9월	0	0	0	0	508	3,210	33,295	47	279	2,699	28,439	55
	10월	162	1,738	10,058	82	562	3,584	38,760	59	363	3,414	33,387	64
	11월	394	2,962	18,387	84	333	2,305	26,221	64	316	2,230	24,396	60
	12월	184	1,036	7,488	72	264	1,730	21,520	47	325	2,261	27,354	62
	누계	2,765	25,915	186,785	77	3,725	20,855	303,555	54	3,829	31,868	364,456	58
	가동률	77%				54%				58%			